

제 안 설 명

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 령 군
(보건행정과)

보건행정과장 한혜연 입니다.

평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,
『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
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.

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「지역보건법」에서 정보과기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대한 기준을
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명확히 반영
하고자 함입니다.

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개정된 지역보건법 인용 조문 및 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 근거 인용
상위법령을 정비하고
-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
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600만원, 2차 위반 시
1,200만원, 3차 위반 시 2,400만원으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말씀드린

『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
대하여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일

보건행정과장 한혜연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5. . .	
연월일	(제 회)	

「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· 징수
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보건행정과장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무팀 심사필

「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·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(과태료) 제1항 신설로 정보과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(2023. 3. 28. 개정)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개정된 지역보건법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3조)
-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절차 근거 인용 상위법령 정비(안 제4조)
-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 추가(안 제3조 별표)
 -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(안 별표)
 - 금액 : 1차 600만원, 2차 1,200만원, 3차 2,400만원

3. 개정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, 22조, 제3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해당없음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-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2024.11.19.~12.9.(의견 없음)
- 조례·규칙심의회 의안 상정·의결 : 24년 12월
- 의회 상정·의결 : 25년 2월

고령군 조례 제 호

「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 중 “제34조제2항”을 “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34조제1항”을 “제34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「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」”
을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(제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.
- 다. 영업(소)의 양도,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(소)에 행해진 처분(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,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)은 양수인,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 승계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천원)

근거법령	위 반 내 용	과 태 료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	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6,000	12,000	24,000
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1호	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	1,000	2,000	3,000
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2호	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	1,000	2,000	3,0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(생략)</p> <p>제3조(부과대상 및 기준)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 등) 과태료의 부과·징수등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「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」에 따른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34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부과대상 및 기준) ----- ---<u>제34조제1항 및 제2항</u>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 등) ----- ---- <u>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</u> - ----- -----.</p>

[관련법령]

지역보건법

제5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) ①~④ 생략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⑦~⑧ 생략

제22조(정보의 파기) ①~② 생략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	
연 락 처	(054) 950 - 7902